

光州直轄市西區廳및洞事務所所在地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(案)

審 查 報 告 書

1993年 5月

總 務 委 員 會

1. 審查經過

- 가. 提出日字 : 1993 年 4 月 7 日
- 나. 提出者 : 光州直轄市 西區廳長
- 다. 回附日字 : 1993 年 4 月 16 日
- 라. 最初上程日字 : 1993 年 5 月 21 日
- 마. 開催回數및 日數 : 1 回 (93. 5. 21.)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提案說明者 : 西區 總務局 總務課長)

가. 提案理由

- 관내 월산1동사무소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월산동 31-27번지의 대지173평에 지하 1층, 지상 2층의 연건평 168평 규모로 신축하여 지난 4월 10일에 완공하였기에 현 위치로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코자함.

나. 主要骨子

- 광주직할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중 월산1동사무소 소재지 203-14번지를 월산동 31-27번지로 변경
- ※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(사무소 소재지변경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專門委員 : 丁浩文)

- 기존 월산1동사무소가 협소하고 노후되어 신축이전에 따른 소재지변경 개정 요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質疑 및 答辯要旨

質 疑	答 辯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앞으로 신축해야될 동사무소 부지는 주차장 면적 확보 등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答辯者 : 總務課長 李占守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나 주차장면적 확보와 민원대기실 환경개선및 행정수행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치밀한 계획을 수립 추진 하겠습니다.

5. 審査結果 :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슴

6. 其他事項 :

광주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광주직할시서구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【별 표】 광주직할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위치중 월산1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월 산 1 동	광주직할시 서구 월산동 31 - 27번지
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p>제명 : 광주직할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</p> <p>【별표】 광주직할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위치</p>		<p>제명 : 광주직할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</p> <p>【별표】 광주직할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위치</p>		
동 명	위 치	동 명	위 치	
월산 1동	광주직할시 서구 월산동 203 - 14번지	월산 1동	광주직할시 서구 월산동 31 - 27번지	